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·위생용품 지원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7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1. 23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엄셋별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·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특히,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청소년에게도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·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청소년 건강 및 복지 증진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, 제8조

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

3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조, 제5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5. 2. 4. ~ 2025. 2. 10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·위생용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·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.

2. “건강·위생용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.

가.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

나.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·위생용품

다.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·위생용품

제3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

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·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4.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·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·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,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해당 법에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·위생용품 지원대상,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·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 건강·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

2.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. 다만,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[시행 2024. 3. 26.] [법률 제2042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5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.

② 청소년은 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학력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.

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·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[시행 2024. 12. 27.] [법률 제19841호, 2023. 12. 26., 타법개정]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 <신설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
[제목개정 2017. 12. 12.]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9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4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